

콩고 (Congo, Republic of the)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	
보험료율 (근로자 / 사용자)	12% (4% / 8%)	12% (4% / 8%)	-
노령연금 수급요건	노동직 : 264개월, 57세 사무직 : 300개월, 60세 경영자 : 360개월, 65세	노동직 : 264개월, 57세 사무직 : 300개월, 60세 경영자 : 360개월, 65세	가입기간이 부족하나 6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부분연금으로 수급
노령연금 지급률(40년)	80%	80%	
일시금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 x 가입연수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 x 가입연수	수급요건 :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62년(연금)
- 현행법 : 1986년(사회보장), 2011년(사회보장), 2012년(연금 및 직업위험), 부분적으로 시행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견습생, 노동조합회원, 임시근로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준공공부문, 민간부문 근로자
- 임의가입 : 자영자
- 특별제도 : 공무원 및 군인

- 가입자
 - 가입소득의 4%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90,000 CFA franc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200,000 CFA francs
- 자영자 : 월 신고소득의 12%
- 사용자
 - 임금 지급총액의 8%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90,000 CFA franc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200,000 CFA francs
- 정부 : 결손금 총당; 사용자로서 납부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노동 근로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64개월 이상인 57세 도달자.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인 60세 도달자. 경영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360개월 이상인 65세 도달자. 단, 조로증이 있는 경우 수급연령은 각각 55세, 57세, 60세임
 - 가입자는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부족분을 일시납으로 소급 납부할 수 있음
 -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
 - 부분연금 : 가입자가 소득활동에서 퇴직하고 노령연금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가입기간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 조기연금 : 노동 근로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64개월 이상인 52세 도달자.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인 55세 도달자. 경영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360개월 이상인 60세 도달자
 -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해외 지급 가능
 - 노령청산금 : 가입자가 소득활동에서 퇴직하고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
- 장애연금
 - 장애연금(사회보험)
 - 장애 발생 전년도에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장애 발생시점에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 중인 자로 근로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고 소득능력이 유사한 직책의 정규직근로자

대비 66.7% 미만인 것으로 판정된 정상퇴직연령 미만인 자

○ 유족연금(사회보험)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할 자격이 있었으며 가입기간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사망자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 및 16세(견습생인 경우 17세, 학생이나 장애자인 경우 20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중지됨

• 유족청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없었으며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사망자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 및 16세(견습생인 경우 17세, 학생이나 장애자인 경우 20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 장제비 :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노동 근로자의 경우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6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44%(사무직 근로자는 50%, 경영자는 60%) 지급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초과하는 12개월 당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초과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씩 추가 지급
- 월 최대 노령연금액은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6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
- 부분연금 : 가입기간 12개월 당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6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씩 산정한 금액 지급
- 조기연금 : 노령연금 산정방식과 동일
- 급여는 분기별 지급
- 급여 조정 :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

• 노령청산금 : 가입기간 12개월 당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 1개월분씩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

- 노령연금 산정방식과 동일. 장애 발생일로부터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기간 1년 당 6개월씩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월 최대 장애연금액은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6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
- 급여는 분기별 지급
- 급여 조정 :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

○ 유족연금

- 배우자 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5%를 배우자에게 지급. 미망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
- 고아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35%를 수급가능 고아에게 지급. 고아가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
- 모든 유족급여 최대 합산금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금은 분기별로 지급
- 급여 조정 :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
- 유족청산금 : 가입연수, 가입자 평균 가입소득 및 가입자 직종유형(노동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또는 경영자)에 기초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일시금의 30%는 배우자에게, 70%는 수급가능 고아에게 지급
- 장제비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 3개월분이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 제도 감독
-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 3인 이사회와 의장에 의해 제도 관리운영
 - www.ensscongo.net

<2019년 ISSA 자료>